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5
----------	------

제출년월일 : 2012. 02.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변경·취소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만들고자함
-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건물번호판을 시에서 직접 제작·교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종 증명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6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 신청에 따른 교부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수수료: 9,300원 /1개당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덧붙임

- 덧붙임 :
1.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기타참고자료(관계법령)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을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 · 신청의 수리와”로,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를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각종 증명 등의”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를 “것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각종 증명 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증명 등”을 각각 “각종 증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을 “신고 · 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기록한 각종 증명 등을”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을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증명 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증명 등”을 각각 “각종 증명 등”으로, “함으로서”를 “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계기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을 “각종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유선과 도선 등을”으로, “정보공개수수료에 대한”을 “정보공개수수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로, “제증명 등”을 “각종 증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을 “않는 각종 증명 등을”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로 한다.

제1호 아록 3)의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기타”를 “그 밖의”로, 차목 1) “기타”를 “그 밖에”로 각각 한다.

제2호 가목 5)의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호 가목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7)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1개당	9,300원	

같은 호 다목 11)의 다), 12)의 다), 21)의 나), 22)의 나)의 “기타”를 “그 밖의”로 각각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u>	<u>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u>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u>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u>(이하 “<u>제증명 등</u> <u>이라 한다</u>)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적용)</u> <u>제증명 등</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p> <p><u>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u> <u>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u></p> <p><u>제4조(기준)</u> ① <u>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 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u></p>	<p><u>제1조(목적)</u> ----- -----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와 ----- ----- “<u>각종 증명 등</u>” <u>이라 한다</u>)의 수수료의 징수에 -----.</p> <p><u>제2조(적용)</u> <u>각종 증명 등의</u> ----- ----- <u>것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라</u> -----.</p> <p><u>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u> <u>각종 증명 등의 종류, 기준,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고,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u></p> <p><u>제4조(기준)</u> ① ----- <u>각종 증명 등</u> ----- -----<u>신고·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나열하여 기록한 각종 증명 등을</u> ----- ----- <u>1명</u>----- ----- -----.</p>

현 행	개 정 안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 -----.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 ----- 1명----- -----.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제5조(징수방법) ① ----- -----각종 증명 등 ----- -----. 각종 증명 등----- ----- 각종 증명 등----- 함으로써 -----. ② 인증계기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p><u>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u></p> <p><u>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u> <u>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u></p>	<p><u>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한다.</u></p> <p><u>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u> <u>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消印)된 증지는 그렇지 않다.</u></p>
<p><u>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감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u> <u>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u> <u>3. (생 략)</u> <u>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u> 	<p><u>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u></p> <p><u>각종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으며 유선과 도선 등은 정보공개 수수료의 ---</u></p> <p><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 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u></p> <p><u>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 신청 ·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u></p> <p><u>3. (현행과 같음)</u></p> <p><u>4. ---</u></p>

현 행	개 정 안
<p>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 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u>제증명 등</u>.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u>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제8조(규칙) 이 조례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p> <p>-----</p> <p>-----</p> <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p> <p>-----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p> <p>----- 각종 증명 등.</p> <p>-----</p> <p>-----.</p> <p>② 제1항에 따라 ----- ----- 않는 각종 증명 등은 -----.</p> <p>제8조(규칙) -----시행에 -----.</p>

관계법령

□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그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재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자·점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 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충주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적용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충주시 수입증지로 한다.